

## 2026년도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제1차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「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」의 제1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9일

〈주무부처〉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
〈전문기관〉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흥원화

내역사업명	RFP 관리번호	RFP 수	선정예정 과제수	당해 연구비 (억원)
차세대바이오	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품목공모-01~08 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지정공모-01 <input type="radio"/> 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1 <input type="radio"/> 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1 <input type="radio"/>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2~04	14	15개 내외	199
인공지능바이오	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품목공모-09 <input type="radio"/> 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2~07 <input type="radio"/> 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2 <input type="radio"/>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지정공모-10	9	17개 내외	190
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	<input type="radio"/>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지정공모-01~09 <input type="radio"/>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1~18	27	31개 내외	124.88
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	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품목공모-10~12 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지정공모-02 <input type="radio"/>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1	5	7개 내외	47.5
미래감염병기술개발	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품목공모-14~21	8	8개 내외	37.89
첨단GW바이오	<input type="radio"/> 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8	1	1개 내외	12
바이오혁신기반조성	<input type="radio"/> 2026-신약-01-품목공모-13	1	1개 내외	20
합계		65	80개 내외	631.27

# 목 차

1. 사업개요 .....	1
2. 지원내용 .....	2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.....	10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.....	14
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.....	16
6. 선정평가 .....	18
7. 기타사항 .....	23
8. 향후일정(안) .....	31
9. 적용 법령 및 규정 .....	31
10. 문의처 .....	32

**사업명:**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

**사업목적**

- 신약,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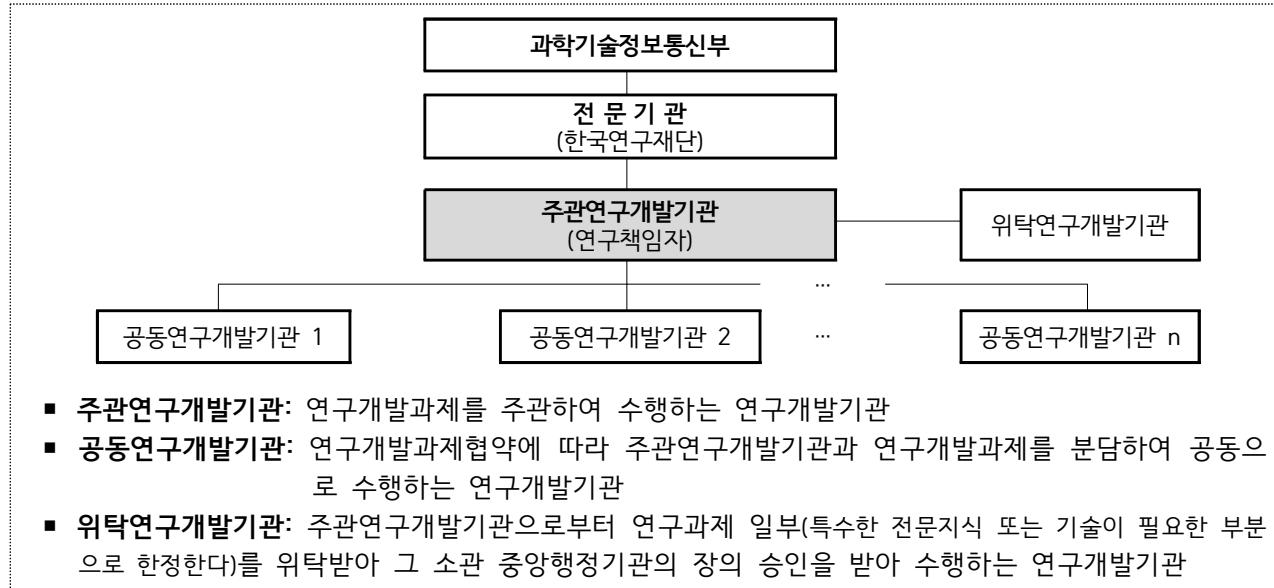
**사업기간/예산(정부출연금):** '04년~계속 / '26년 4,429.76억원

**사업 내용**

- 신약, 줄기세포, 첨단의료 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

**사업수행체계 및 용어**

< [일반연구개발과제]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(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) >



- **주관연구개발기관:**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**공동연구개발기관:**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**위탁연구개발기관:**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지원 분야: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(세부사업) 총 80개 과제 내외

내역사업	RFP 관리번호	연구주제명	당해 연구비 (억원)	선정 예정 과제 수	과제형태	RFP 유형 코드	보안 등급
차세대 바이오	2026-신약01-품목공모-01	혁신재생신약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원천/기반 기술 개발	10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2	혁신재생신약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고도화 및 실증 플랫폼 개발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3	바이오프린팅 기반 이식용 혁신재생치료제 제조 원천 기술 개발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4	인공지능 기반 혁신재생신약용 장기 특이적 바이오잉크 소재 개발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5	신소호흡 및 에너지 대사 조절 혁신 신약 개발	12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6	나노바디 엔지니어링 플랫폼 개발을 통한 차세대 신약혁신 기반구축	12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7	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사업	40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08	AI 기반 약물 장기 독성 예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	16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자정공모-01	차세대 표적단백질 분해 합성신약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	10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1	AI 기반 산-뇌혈관질환 극복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	12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1	미약류 등 유해 환경요인 극복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융합 솔루션 개발	6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2	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	16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3	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바이오컴퓨팅 기술 개발	10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4	인체 뇌모사모델 고도화 기술개발	10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인공지능 바이오	2026-신약01-품목공모-09	AI 활용 나노포어 기반 Undruggable target 신약 스크리닝 기술 개발 사업	18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2	바이오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사업 (분야1~3)	52	5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3	구조기반 RNA 신약개발 지원 (분야1~2)	24	3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4	AI-Medicine 신약개발 전주기 멀티 에이전트 AI 플랫폼 구축 및 실증	28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5	AI 기반 바이오소재 학술정보 검색·분석 플랫폼 구축	6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6	초고속·고정밀 RNA 화학적 변형(RM)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자정공모-07	국가 바이오데이터 보호 및 자립 고도화 지원 (분야1~2)	16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2	AI활용 유효성분 극대학 합성식물체 제작 기술개발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10	K-NeuroMind: 인지기능 브레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	16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1	노파/멀티모달 생체신호 및 라이프로그 기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2	집속초음파 기반 비침습적 뇌혈관장벽 조절 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3	신경면역 활성조절을 통한 뇌질환 극복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4	신경전달물질 상관성 기반 정서장애 극복 웨어러블 말초신경 조절 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5	비유전자교정 기술 기반 회구뇌질환 치료 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6	첨단바이오의약품 기반 십식장애 치료 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7	융합기술 기반 이온 채널·막단백질 표적 뇌질환 치료제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8	체액기반 뇌질환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고감도 바이오 센서 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자정공모-09	스트레스 반응 조절을 통한 뇌질환 제어기술 개발	5.6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1	뇌기능 증진 웨어러블 말초신경 조절 기술	6.75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2	대사 질환 극복 뇌조절 기술	6.75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3	이온 채널/막단백질 조절 뇌질환 치료 기술	6.75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4	뇌질환 바이오마커 검출한계 극복 기술	6.75	2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5	뇌기능/뇌질환 시각화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6	개인 맞춤형 비침습적 뇌피질 자극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7	감각지각 기반 뇌-외부환경 상호작용 뇌신호 디코딩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8	시냅스 병증 제어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9	신경독성 단백병증 제어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0	신경 가소성 기반 인지기능 향상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1	뇌 신경계 빌드업 과정 해독을 통한 뇌질환 극복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2	다중 뇌 신호 통합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뇌질환 예측 진단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3	뇌 기능 조절 비침습/최소 침습 뇌 심부 자극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4	뇌질환 동물모델 표현형 분석 기술 고도화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5	뇌질환 영장류 모델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6	신경망 제어 뇌질환 치료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7	막성/비막성 세포소기관 뇌질환 표적발굴 및 제어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18	뇌-말초환경 상호작용 조절 기반 뇌질환 치료 기술	3.3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S0-1	일반
미래의료 혁신대응 기술개발	2026-신약01-품목공모-10	음향구동 기반 능동 약물전달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사업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11	방사성의약품 표적 기술 고도화 플랫폼 개발	9	3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자정공모-02	방사성의약품 표적 기술 고도화 플랫폼 개발 총괄 운영지원	1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9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12	섬유화 이행 조절 원천기술개발	1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1	최소 침습 다기능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중추신경계 손상 치료 플랫폼 기술개발	7.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미래감염병기술개발	2026-신약01-품목공모-14	RNA 바이러스 종합효소 구조기능 분자진화 연구	3.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01-품목공모-15	자가복제 RNA 원천기술 개발	3.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
	2026-신약-01-품목공모-16	차세대 백신 면역증강제 원천기술 개발	5.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-01-품목공모-17	マイクロ나노 기반 차세대 백신 전달기술 개발	5.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-01-품목공모-18	미래 바이러스성 감염 대응을 위한 신규 모달리티 치료제 개발	5.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-01-품목공모-19	신규 모달리티 기반 항생제 내성극복 치료제 개발	5.2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-01-품목공모-20	미유입 고병원성 감염병 대응 진단 기술 개발	3.75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	2026-신약-01-품목공모-21	고위험 감염병 백신치료제 표준 유효성 평가법 기술 개발	5.64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0-1	일반
첨단GW 바이오	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8	메탄 활용 식물친화형 생장촉진 바이오소재 개발	12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바이오혁신기 반조성	2026-신약-01-품목공모-13	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및 세포특성분석 기술 지원을 위한 기법기술 구축사업	20	1개 내외	일반연구개발	R1-1	일반

- \* [2026-신약-01-품목공모-01~02]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두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
- \* [2026-신약-01-품목공모-03~04]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두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
- \* [2026-신약-01-품목공모-11], [2026-신약-01-지정공모-02]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두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
- \* [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2~04]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세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
- \* [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]에서 동시에 한 과제만 신청과 수행이 가능함(책임, 공동, 참여 모두 해당함)
- \* [2026-신약-01-품목공모-02~10, 12~13, 21], [2026-신약-01-지정공모-01], [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1], [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2(분야1~2)], [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1]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필수
- \* [2026-신약-01-품목공모-08] 병원 참여 필수
- \* [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4] 신약개발 후보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산업체 참여 필수
- \* [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2] 식물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와 AI·데이터 전문가 참여 필수
- \* [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2] 기업 참여 필수
- \* [2026-신약-01-지정공모-02]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(3책 5공) 적용 예외 과제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 제3호)

## □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(정부출연금) 규모

\*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, 예산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또한,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

(단위: 억원)

RFP 관리번호	총 연구기간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4차년도		5차년도	
	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
2026-신약01-품목공모-01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5	2027.1.1.~2027.12.31	6.66	2028.1.1.~2028.12.31	6.66	2029.1.1.~2029.12.31	6.66	2030.1.1.~2030.12.31	6.66
2026-신약01-품목공모-02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5	2027.1.1.~2027.12.31	20	2028.1.1.~2028.12.31	20	2029.1.1.~2029.12.31	20	2030.1.1.~2030.12.31	20
2026-신약01-품목공모-03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5	2027.1.1.~2027.12.31	20	2028.1.1.~2028.12.31	20	2029.1.1.~2029.12.31	20	2030.1.1.~2030.12.31	20
2026-신약01-품목공모-04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5	2027.1.1.~2027.12.31	20	2028.1.1.~2028.12.31	20	2029.1.1.~2029.12.31	20	2030.1.1.~2030.12.31	20
2026-신약01-품목공모-05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2	2027.1.1.~2027.12.31	16	2028.1.1.~2028.12.31	16	2029.1.1.~2029.12.31	16	2030.1.1.~2030.12.31	16
2026-신약01-품목공모-06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2	2027.1.1.~2027.12.31	16	2028.1.1.~2028.12.31	16	2029.1.1.~2029.12.31	16	2030.1.1.~2030.12.31	16
2026-신약01-품목공모-07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40	2027.1.1.~2027.12.31	50	2028.1.1.~2028.12.31	50	2029.1.1.~2029.12.31	50	2030.1.1.~2030.12.31	50
2026-신약01-품목공모-08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6	2027.1.1.~2027.12.31	21.33	2028.1.1.~2028.12.31	21.33	2029.1.1.~2029.12.31	21.33	2030.1.1.~2030.12.31	21.33
2026-신약01-품목공모-09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8	2027.1.1.~2027.12.31	24	2028.1.1.~2028.12.31	24	2029.1.1.~2029.12.31	24	2030.1.1.~2030.12.31	24
2026-신약01-품목공모-10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5	2027.1.1.~2027.12.31	20	2028.1.1.~2028.12.31	20	2029.1.1.~2029.12.31	20	2030.1.1.~2030.12.31	20
2026-신약01-품목공모-11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3	2027.1.1.~2027.12.31	4	2028.1.1.~2028.12.31	4	2029.1.1.~2029.12.31	6	2030.1.1.~2030.12.31	6
2026-신약01-품목공모-12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5	2027.1.1.~2027.12.31	20	2028.1.1.~2028.12.31	20	2029.1.1.~2029.12.31	20	2030.1.1.~2030.12.31	20
2026-신약01-품목공모-13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20	2027.1.1.~2027.12.31	26.66	2028.1.1.~2028.12.31	26.66	2029.1.1.~2029.12.31	26.66	2030.1.1.~2030.12.31	26.66
2026-신약01-품목공모-14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3.75	2027.1.1.~2027.12.31	5	2028.1.1.~2028.12.31	5	2029.1.1.~2029.12.31	5	2030.1.1.~2030.12.31	5
2026-신약01-품목공모-15	2026.4.1.~2030.12.31	2026.4.1.~2026.12.31.	3.75	2027.1.1.~2027.12.31	5	2028.1.1.~2028.12.31	5	2029.1.1.~2029.12.31	5	2030.1.1.~2030.12.31	5

(단위: 억원)

RFP 관리번호	총 연구기간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4차년도		5차년도	
	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
	(3+2년)										
2026-신약01-품목공모-16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5.25	2027.1.1.~2027.12.31	7	2028.1.1.~2028.12.31	7	2029.1.1.~2029.12.31	7	2030.1.1.~2030.12.31	7
2026-신약01-품목공모-17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5.25	2027.1.1.~2027.12.31	7	2028.1.1.~2028.12.31	7	2029.1.1.~2029.12.31	7	2030.1.1.~2030.12.31	7
2026-신약01-품목공모-18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5.25	2027.1.1.~2027.12.31	7	2028.1.1.~2028.12.31	7	2029.1.1.~2029.12.31	7	2030.1.1.~2030.12.31	7
2026-신약01-품목공모-19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5.25	2027.1.1.~2027.12.31	7	2028.1.1.~2028.12.31	7	2029.1.1.~2029.12.31	7	2030.1.1.~2030.12.31	7
2026-신약01-품목공모-20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3.75	2027.1.1.~2027.12.31	5	2028.1.1.~2028.12.31	5	2029.1.1.~2029.12.31	5	2030.1.1.~2030.12.31	5
2026-신약01-품목공모-21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5.64	2027.1.1.~2027.12.31	7	2028.1.1.~2028.12.31	7	2029.1.1.~2029.12.31	7	2030.1.1.~2030.12.31	7
2026-신약01-지정공모-01	2026.4.1.~2031.12.31 (3+3년)	2026.4.1.~2026.12.31.	10	2027.1.1.~2027.12.31	29.33	2028.1.1.~2028.12.31	45.33	2029.1.1.~2029.12.31	48.33	2030.1.1.~2030.12.31	52.33
2026-신약01-지정공모-02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	2027.1.1.~2027.12.31	1.33	2028.1.1.~2028.12.31	1.33	2029.1.1.~2029.12.31	1.33	2030.1.1.~2030.12.31	1.33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1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2	2027.1.1.~2027.12.31	16	2028.1.1.~2028.12.31	16	2029.1.1.~2029.12.31	16	2030.1.1.~2030.12.31	16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2(분야1)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2	2027.1.1.~2027.12.31	16	2028.1.1.~2028.12.31	16	2029.1.1.~2029.12.31	16	2030.1.1.~2030.12.31	16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2(분야2)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2	2027.1.1.~2027.12.31	16	2028.1.1.~2028.12.31	16	2029.1.1.~2029.12.31	16	2030.1.1.~2030.12.31	16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2(분야3)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4	2027.1.1.~2027.12.31	4	2028.1.1.~2028.12.31	4	2029.1.1.~2029.12.31	4	2030.1.1.~2030.12.31	4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3(분야1)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6	2027.1.1.~2027.12.31	8	2028.1.1.~2028.12.31	8	2029.1.1.~2029.12.31	8	2030.1.1.~2030.12.31	8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3(분야2)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12	2027.1.1.~2027.12.31	16	2028.1.1.~2028.12.31	16	2029.1.1.~2029.12.31	16	2030.1.1.~2030.12.31	16
2026-차세대비이온-01-자정공모-04	2026.4.1.~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2026.12.31.	28	2027.1.1.~2027.12.31	37.25	2028.1.1.~2028.12.31	37.25	2029.1.1.~2029.12.31	37.25	2030.1.1.~2030.12.31	37.25

(단위: 억원)

RFP 관리번호	총 연구기간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4차년도		5차년도	
	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자정공모-05	2026.4.1.~ 2028.12.31 (1+2년)	2026.4.1.~ 2026.12.31.	6	2027.1.1.~ 2027.12.31	8	2028.1.1.~ 2028.12.31	8	-	-	-	-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자정공모-06	2026.4.1.~ 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 2026.12.31.	15	2027.1.1.~ 2027.12.31	20	2028.1.1.~ 2028.12.31	20	2029.1.1.~ 2029.12.31	20	2030.1.1.~ 2030.12.31	20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자정공모-07 (분야1)	2026.4.1.~ 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 2026.12.31.	9	2027.1.1.~ 2027.12.31	12	2028.1.1.~ 2028.12.31	12	2029.1.1.~ 2029.12.31	12	2030.1.1.~ 2030.12.31	12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자정공모-07 (분야2)	2026.4.1.~ 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 2026.12.31.	7	2027.1.1.~ 2027.12.31	9.3	2028.1.1.~ 2028.12.31	9.3	2029.1.1.~ 2029.12.31	9.3	2030.1.1.~ 2030.12.31	9.3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자정공모-08	2026.4.1.~ 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 2026.12.31.	12	2027.1.1.~ 2027.12.31	16	2028.1.1.~ 2028.12.31	16	2029.1.1.~ 2029.12.31	16	2030.1.1.~ 2030.12.31	16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분야공모-01	2026.4.1.~ 2028.12.31 (2+1년)	2026.4.1.~ 2026.12.31.	6	2027.1.1.~ 2027.12.31	8	2028.1.1.~ 2028.12.31	8	-	-	-	-
2026-차세대 비이오-01- 분야공모-02	2026.4.1.~ 2030.12.31 (3+2년)	2026.4.1.~ 2026.12.31.	15	2027.1.1.~ 2027.12.31	20	2028.1.1.~ 2028.12.31	20	2029.1.1.~ 2029.12.31	20	2030.1.1.~ 2030.12.31	20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품목공모-01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7.5	2027.1.1.~ 2027.12.31	10	2028.1.1.~ 2028.12.31	10	2029.1.1.~ 2029.12.31	10	2030.1.1.~ 2030.12.31	10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품목공모-02	2026.4.1.~ 2032.12.31 (4+3년)	2026.4.1.~ 2026.12.31.	16	2027.1.1.~ 2027.12.31	21.33	2028.1.1.~ 2028.12.31	21.33	2029.1.1.~ 2029.12.31	21.33	2030.1.1.~ 2030.12.31	21.33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품목공모-03	2026.4.1.~ 2032.12.31 (4+3년)	2026.4.1.~ 2026.12.31.	10	2027.1.1.~ 2027.12.31	13.33	2028.1.1.~ 2028.12.31	13.33	2029.1.1.~ 2029.12.31	13.33	2030.1.1.~ 2030.12.31	13.33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품목공모-04	2026.4.1.~ 2032.12.31 (4+3년)	2026.4.1.~ 2026.12.31.	10	2027.1.1.~ 2027.12.31	13.33	2028.1.1.~ 2028.12.31	13.33	2029.1.1.~ 2029.12.31	13.33	2030.1.1.~ 2030.12.31	13.33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자정공모-01	2026.4.1.~ 2028.12.31 (3년)	2026.4.1.~ 2026.12.31.	5,625	2027.1.1.~ 2027.12.31	7.5	2028.1.1.~ 2028.12.31	7.5	-	-	-	-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자정공모-02	2026.4.1.~ 2028.12.31 (3년)	2026.4.1.~ 2026.12.31.	5,625	2027.1.1.~ 2027.12.31	7.5	2028.1.1.~ 2028.12.31	7.5	-	-	-	-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자정공모-03	2026.4.1.~ 2028.12.31 (3년)	2026.4.1.~ 2026.12.31.	5,625	2027.1.1.~ 2027.12.31	7.5	2028.1.1.~ 2028.12.31	7.5	-	-	-	-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자정공모-04	2026.4.1.~ 2028.12.31 (3년)	2026.4.1.~ 2026.12.31.	5,625	2027.1.1.~ 2027.12.31	7.5	2028.1.1.~ 2028.12.31	7.5	-	-	-	-
2026-나첨단 의공학-01- 자정공모-05	2026.4.1.~ 2028.12.31	2026.4.1.~ 2026.12.31.	5,625	2027.1.1.~ 2027.12.31	7.5	2028.1.1.~ 2028.12.31	7.5	-	-	-	-

(단위: 억원)

(단위: 억원)

RFP 관리번호	총 연구기간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4차년도		5차년도	
	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	연구기간	연구비
	(5년)										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2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3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4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5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6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7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2026-뇌첨단 의공학01- 분야공모-18	2026.4.1.~ 2030.12.31 (5년)	2026.4.1.~ 2026.12.31.	3,375	2027.1.1.~ 2027.12.31	4.5	2028.1.1.~ 2028.12.31	4.5	2029.1.1.~ 2029.12.31	4.5	2030.1.1.~ 2030.12.31	4.5

※ 동일 RFP 내에서도 분야별로 연구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[붙임] RFP 내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

※ [2026-신약-01-지정공모-01] 6차년도(2031년)의 연구비는 76.33억 (표에 기재되지 않음)

※ [2026-뇌-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2] 6차년도(2031년), 7차년도(2032년)의 연구비는 21억 (표에 기재되지 않음)

※ [2026-뇌-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3~04] 6차년도(2031년), 7차년도(2032년)의 연구비는 13억 (표에 기재되지 않음)

## 3

##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## □ 신청자격

### 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#### 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#### 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시행령 제2조 제①항

-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### 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

-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**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**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**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**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  2.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 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##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

-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
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 - \*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

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
\* 단,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\*,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

\*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+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“0” 이상인 경우(단,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(우선주) 자본금에 한함)

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\*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## □ 신청 제한사항

-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 
단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\*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현신법 시행령」제59조 제1항
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-3책 5공)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(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)

\*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‘책’,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‘공’, 모든 참여연구원은 ‘공’

\*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

\*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(3책 5공)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선정 취소(협약해약) 사유에 해당

\*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,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

- (인건비 계상률\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\*\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\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 =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/ 연 급여)

\*\*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%(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),  
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%만 참여 가능

- (과제기획 참여자)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

- (연구기관 구성 제한)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\*으로 구성해야 함

\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
- 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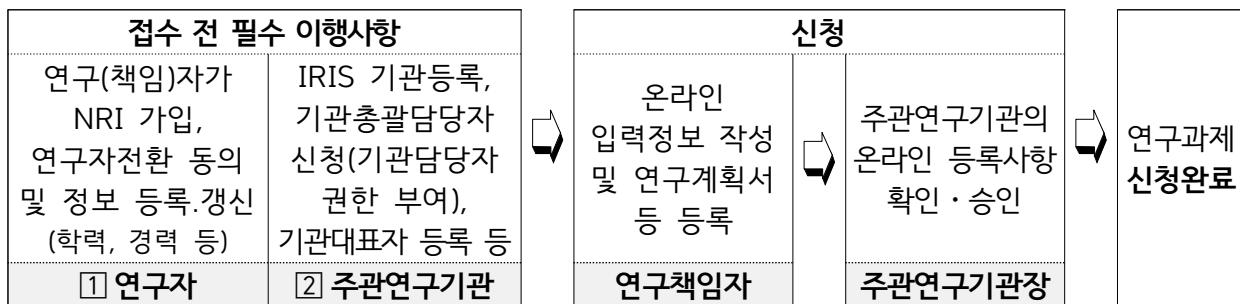
<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>

연구개발기관 구분	사례1	사례2	사례3	사례4	사례5
주관연구개발기관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
공동연구개발기관1	B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	B기관	<b>B기관</b>
공동연구개발기관2	C기관	B기관	<b>B기관</b>	C기관	C기관
위탁연구개발기관	D기관	D기관	C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
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	가능	불가능	불가능	불가능	불가능

- (중복 신청 제한)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\*로만 신청 가능
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(연구책임자)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
  -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
  - ※ 참여연구원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
  - 하나의 RFP가 복수의 세부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RFP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
  - 일부 내역사업은 내역 사업 내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기사항 확인
- (유사과제 신청 제한)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  - ※ 차별성 검토 방법: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 로그인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
 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- (선정 우선순위 제출) 2026년 4월 개시 바이오·의료기술사업(단위사업) 내 복수의 과제 신청·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요건 미충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우선순위 (「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」: 별첨 작성 양식 참조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

신청방법 및 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\*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  
 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 
 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
 ※ ① and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  
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
 ※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: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
 - 시설장비 등록방법: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>[R&D고객센터]>[보유장비정보] 메뉴에서 등록

<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>  
 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  
 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  
 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
 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과제 접수 매뉴얼: 붙임 자료 참조
-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‘국책연구\_기획평가전문분야(국책연구사업)’를 선택하여야 함

## 제출서류

- 2026년도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 (주관, 공동)
- 2026년도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각 1부
  - ※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
  - ※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

<별첨 서류 목록>

구분	목록	제출주체		
		주관 기관	공동 기관	위탁 기관
별첨1	[필수]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	○	○	X
별첨2	[필수] 기관참여 확약서	○	○	○
별첨3	[필수]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	○	○	○
별첨4	[필수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,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	○	○	○
별첨5	[해당 시 필수] 가감점 증빙서류	○	X	X
별첨6	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	○	○	○
별첨7	[해당 시 필수]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	○	○	X
별첨8	[해당 시 필수] 기관 지원확약서	○	○	○
별첨9	[해당 시]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	○	○	○
별첨10	[협약 시] 생명연구지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	○	○	○
별첨11	[협약 시][해당 시] 신규인력 활용계획서(청년고용 연계형)	○	○	○
별첨12	[협약 시][해당 시] 학생연구원 기술로 보상금 지급 기준	○	○	○

##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

- 목차 1. 연구개발의 필요성 ~ 4.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

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(주관+공동 기준)	계획서 분량	
	주관연구개발기관	공동연구개발기관
연 5억원 미만	60쪽 이내	15쪽 이내
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100쪽 이내	20쪽 이내
연 20억원 이상	제한 없음	제한 없음

※ 제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## 5

##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### 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2026. 1. 9.(금) ~ 2026. 2. 9.(월) 18:00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	2026. 1. 9.(금) ~ 2026. 2. 9.(월) 18:00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	~2026. 2. 10.(화) 18:00
신청 절차	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- ※ 연구책임자 접수완료, 연구수행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
- **연구책임자:**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**연구개발기관:**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  - **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 내에 각각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등 접수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(마감기한 연장 불가)**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
  - ※ 단,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
  - ※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, Data Management Plan)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,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충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RFP 내 명시된 공동,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구성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미준수 시 평가 제외(요건탈락)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
-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선정 후 주요사항(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  - \*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연구책임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7조,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\* 현황정보\*\*를 포함하여야 하고,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권고) 현행화(IRIS 활용)
  - \* 국외수혜: 외국 정부·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·행정적(연구과제, 인력, 장비, 시설) 지원 및 강의·자문·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(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)
  - \*\* 지원·지급 출처, 사유, 기간, 내용,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

**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 ③**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...

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
- 한국연구재단 신규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, 해당 계획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  - \*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('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- (해당 시) 3천만원~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
  - \* [근거]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, 1억 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
    - \*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'별도 심의 신청 필수
    - \* 계획서 상 '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'에 관련 내용 명시
- (해당 시)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
  - \* 단,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,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**추진근거**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)

 **기본방향**

-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
-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
-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
-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

 **평가방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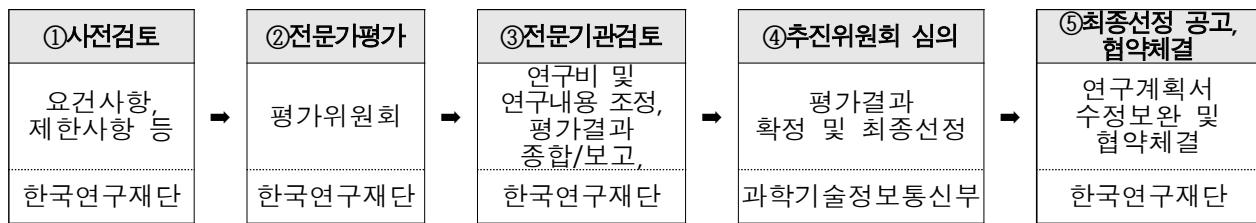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라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(이하 “평가위원회”)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, 온라인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
  -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/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
    - ※ 평가대상 과제규모,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,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
    - ※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 별도 안내
-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
-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

## 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
연구계획 (35)	사회적(산업적) 수요 적합성에 기반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-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	20
	연구계획의 타당성 - 공고사항(공고문, 연구주제안내서)과의 부합성 - 연구목표의 명확성 -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	15
연구역량 (25)	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-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-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 추진 가능성	25
성과활용 (40)	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및 기대효과 -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-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, 과학계·국민·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	20
	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- 지재권 확보 전략,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	20
<b>합계</b>		<b>100</b>

\* 일부 내역사업은 상기 표와 평가항목 및 배점이 상이하니 과제 제안요구서를 반드시 확인

## □ 평가절차



\*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

## ○ (사전검토)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,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

사전검토 항목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,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

- (평가위원회 평가)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
 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)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
    - \*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

### < 선정평가 시 차별성·중복성 검토 절차 >

- ① 연구자: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·중복성 관련 자료 제출
- ② 전문기관: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기존(10년 이내) 연구개발과제 차별성 확인(NTIS검색)
- ③ 평가위원회: 차별성 30점 이하 과제의 차별성·중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
\*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, 제3항

-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
- (해당 시)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, 연구 시설·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
※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,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

- (이의신청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
  - (인정 범위)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, 평가위원,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

### □ 가감점 제도

- 과기정통부 처리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,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.
-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하고, 가점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, 제출 증빙을 확인 후 적용
-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
  -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  
※ (예)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일부 과제만 (최종)발표평가를 한 경우 발표평가 점수만 가점
  - 최종평가 가점의 경우, 현 시행계획에 따라 2년 이내\*에 과기정통부가 실시\*\*한 최종 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총괄/단위/주관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해 가점 부여  
\*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
\*\* 과기정통부(전문기관)가 주관한 최종평가가 아닌 경우(예: 자체평가 등) 인정하지 아니 함
  -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은 연구주제별(분야 존재 시 분야별) 선정 예정 과제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
  - 적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접수 마감일 기준

< 과기정통부 처리규정 별표1(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·감점의 기준 및 방법) >

※ 연구개발사업의 성격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

가점 항목	가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(최종평가 후 2년간)	전문가 취득점수 +0.5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(과제 종료 후 2년간)	전문가 취득점수 +0.5점
연구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우수연구성과 100선 중 생명 분야 선정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발전 유공자에 대해 1회 적용	전문가 취득점수 +0.5점
징수한(입금된)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(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및 입금)*	전문가 취득점수 +0.5점
징수한(입금된)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,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·기술출자·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(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및 입금)*	전문가 취득점수 +0.2점
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**	전문가 취득점수 +0.3점
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***	전문가 취득점수 +0.3점
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****	전문가 취득점수 +0.3점
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*****	전문가 취득점수 +0.3점
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(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) 이외 소재 대학, 단,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(KAIST, GIST, DGIST, UNIST, 포항공대) 제외)*****	전문가 취득점수 +0.3점

감점 항목	감점
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(학술진흥법, 과학기술기본법 상의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처분 포함)	전문가 취득점수 -5.0점
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	전문가 취득점수 -3.0점

\* 기술료·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(+0.5점 또는 +0.2점)

\*\* 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」 근거, 신약개발 관련 사업에만 적용

\*\*\*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」 근거, 신약개발 관련 사업에만 적용하며,  
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·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

\*\*\*\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근거

\*\*\*\*\*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 근거

\*\*\*\*\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근거

## 평가 기타 사항

- (차별성 검토)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차별성 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
    - 전문기관은 접수과제를 전수 조사하여 차별성 점수 30점 이하 과제를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
    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
  - ※ <차별성 검토 기준: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12조제3항> 1.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, 2. 연구개발 주제·목표·수행방식의 차이점
  - (동점자 처리) 동점 발생 시 「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\* 동점자 처리 방안」을 따름
- \* 평가항목 평가점수: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

(해당시) 연구과제 상세계획 실시

-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, PM과 연구자 간 상세계획을 통해 연구계획 보완·개선
-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,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,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

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**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**

- 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장을 말한다)는 개인사업자,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, 사전조사·기획평가, 연구개발과제의 조정·관리,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 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-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,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·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,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

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

-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‘데이터관리계획’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(계획서 첨부 양식)

- 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 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- 선정평가-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
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- 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·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)

#### **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**

-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
-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  -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
\*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)
-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,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-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#### **□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**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

## [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]

### □ 중소·중견·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

-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·대기업에 대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

#### <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• 중소기업인 경우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
• 중견기업인 경우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
#### <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>

• 중소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• 중견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### 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

- (개념) 국가 R&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총액기준)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
- 주요내용

- (대상 기업) 연구개발과제(위탁과제포함)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,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

※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

#### <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>

구 분	연구개발기관1(기업)	연구개발기관2(기업)	합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7억원	8억원	15억
의무채용	3명(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, 기업 당 1명이상)		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(신규채용 기준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
  - ※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 하여 2개 과제에 계상을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  - ※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을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- (의무채용 시점)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, 부처·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\* 가능
  - \*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

## 료

<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(3년간 지원)>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3억원	3억원	4억원
의무채용	1명	1명	0명

※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

- **(고용유지 기간)**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‘1년 이상’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별,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(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)

### ○ 실적 점검

- **(협약시)**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※ 협약용 계획서 작성/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

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**(중간점검)**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

- **(위반시)**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\*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(既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

\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### 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

- **(개념)** 중소·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\*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

\* (예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

### ○ 주요내용

- **(채용조건)**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**(적용대상)**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·중견기업

※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,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- **(고용 유지)** 1년 이상 고용 유지

-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

※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
※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
- **신규채용 기준**

- **(신규과제)**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- (계속과제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- (현금부담 감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  - ※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
○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 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  - ※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
  - 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(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)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
- (요건 미충족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

- (개념) 중소·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% 만큼 감면
- 주요내용
  - (대상 기업)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,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
  - (채용 조건) 만15세~34세의 정부 R&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  - (신규채용 기준)
    -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: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 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    - 직접 실시 시: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
      - 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
  - (고용 유지)
    -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: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
    - 직접 실시 시: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\* 후 2년
      - \*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
      - 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
  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○ 실적 점검

- **(기술실시협약)** 기술실시계약 보고,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\*
  - \*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
  -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
- **(기술료 등 감면)**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
  -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
  -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
- **(요건 미충족시)**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\* 기술료 감면 미적용
  - \*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

## 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실험 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.

- ◇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함.

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: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,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·연계되며,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.

- ◇ 또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3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 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.

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·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·보관될 수 있으며,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.

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

-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
※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(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)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

-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

※ 문의처: 국가생명윤리정책원(02-737-8970)

\*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)

## 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-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\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부서(분양대표전화 1661-9070)에 확인한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만 신청해야 함.

\* 인체유래물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## □ (LMO 이용 시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>) 확인

(해당시) 생명연구자원(소재+데이터) 기탁·등록 의무 이행

- 본 과제 선정 시, 산출되는 생명자원(생물자원 및 생명정보)을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·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
※ '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'(20.5.)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

(해당시) 젠더혁신 관점 연구

-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/젠더(성과 젠더, 성 또는 젠더)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작성 ([별첨 9])

(연 3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) 향후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

(연 5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) 인문·사회·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

-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, 법적, 사회적 영향(ELSI\*), 연구성과의 시장가치,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,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

\* ELSI(Ethical, Legal and Social Implication)

(필요시, 전담인력 지정) 원활한 연구단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 인력으로 필수 지정

생명연구자원 이용 연구자의 나고야의정서(ABS) 준수 의무에 따라 안내·제공·신고 의무 등 핵심 사항을 연구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안내

**8****향후 일정(안)**

일정	내용
2026. 1. 9.(금) ~ 2. 9.(월)	공고 기간
2026. 1. 9.(금) ~ 2. 9.(월) ~ 2. 10.(화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연구자 신청 마감일)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
2026. 3~4월	선정평가 실시
2026. 4월	사업추진위원회 심의
2026. 4월	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※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

**9****적용 법령 및 규정**

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, 연구지원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</li> <li>○ 기타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,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</li> </ul>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</li> <li>○ 2026년도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등</li> </ul>

## 10

## 문의처

### □ 문의 절차

\*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



문의 전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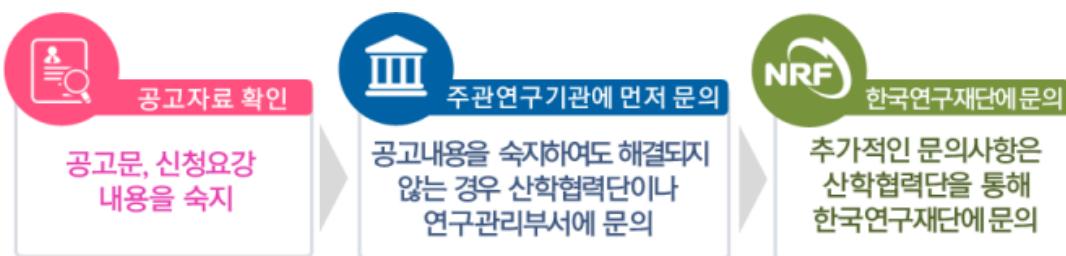
공고문,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.



문의순서

(1차) 연구자 → 주관연구기관에 문의

(2차) 주관연구기관 → 한국연구재단에 문의



### 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<https://msit.go.kr>) → 소식 → 사업공고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신규사업공모

### 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  - 법·규정·규칙: 「자료실」→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→ 「공통 법·규정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」 관련 규정 확인

### □ 문의처: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

구분	RFP 관리번호	담당부서	연락처	이메일
IRIS 시스템 관련 문의	IRIS 콜센터(1877-2041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			
RFP, 접수, 양식 관련 문의	2026-신약-01-품목공모-01~21 2026-신약-01-지정공모-01~02	신약단	042-869-6610	nrfbio@nrf.re.kr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1~08 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1~02	차세대바이오단	042-869-7720	nrfbio2@nrf.re.kr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1~04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1~18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지정공모-01~10	뇌·첨단의공학단	042-869-7710	neuro@nrf.re.kr
평가 관련 문의	2026-신약-01-품목공모-01~21 2026-신약-01-지정공모-01~02	국가전략사업 평가팀	042-869-7763	haeun@nrf.re.kr
	2026-차세대바이오-01-지정공모-01~08 2026-차세대바이오-01-분야공모-01~02		042-869-7762	ksy9295@nrf.re.kr
	2026-뇌·첨단의공학-01-품목공모-01~04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분야공모-01~18 2026-뇌·첨단의공학-01-지정공모-01~10		042-869-7767	jwjw@nrf.re.kr

## 붙임 1. 과제제안요구서(RFP)

2. 양식 및 안내
3.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